

우간다 (Ugand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임의적용대상자	자영자, 이전 당연적용 대상	자영자, 이전 당연적용 대상,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	임의가입 대상 확대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5% / 7.5%(임의) / 10%	5% / 7.5%(임의) / 10%	-
연금수급 개시연령	55세	5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적립기금제도로 납부요건 없음	적립기금제도로 납부요건 없음	-
노령급여 지급 산정식	'납부총액 + 이자'를 일시금으로 지급	'납부총액 + 이자'를 일시금으로 지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7년(사회보장)
- 현행법 : 1985년(사회보장기금), 2011년(퇴직급여당국)

2 제도형태

- 적립기금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, 이전에 당연적용 가입자,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
- 적용제외 : 승인받은 민간연금제도 가입자 및 이전에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, 지방공무원, 군인, 경찰, 교정직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소득의 5%(임의가입자는 최소 7.5%)
- 자영자 : 월 소득의 최소 7.5%
- 사용자 : 월 임금의 10%
- 정 부 : 없음

※ 가입자, 자영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한·하한소득 기준 없음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- 55세 도달; 청구 최소 1년 전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 50세 도달; 승인된 사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영구 이주하는 경우 55세 이전
 - 상시근로는 중단되어야 함
- 장애급여
 - 가입자가 장애발생 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할 수 없는 완전영구장애 판정을 받거나 일상 생활을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영구부분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
 - 근로는 중단되어야 함
 - 전문 의료진이 장애 정도를 판정하며, 가입자는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,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에 의뢰하여 의료진이 판단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
- 유족급여
 -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전액 인출 전 사망 시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(우선순위대로)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(사망자가 전적으로 부양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음), 부양부모와 형제, 조부모, 손자녀, 최근친, 장례비를 지불한 자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급여
 -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총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 - 이자율 조정 : 연간 이자율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투자수익률에 따르며 재무계획경제개발부와 합의하여 결정
- 장애급여
 -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총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 - 이자율 조정 : 연간 이자율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투자수익률에 따르며 재무계획경제개발부와 합의하여 결정
- 유족급여
 -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총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고 인출한 금액을 제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 - 이자율 조정 : 연간 이자율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투자수익률에 따르며 재무계획경제개발부와 합의하여 결정

- 재무계획경제개발부(Ministry of Finance, Planning, and Economic Development)
 - 전반적 감독
 - <http://www.finance.go.ug>

- 우간다퇴직급여규제당국(Uganda Retirement Benefits Regulatory Authority)
 - 적립기금과 사적연금제도의 감독 및 규제
 - <http://urbra.go.ug>
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3자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 담당
 - <http://www.nssfug.org>

<2019년 ISSA 자료>